

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)

[시행 2024. 3. 25.] [보건복지부령 제1001호, 2024. 3. 25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지역복지과) 044-202-3124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문 조사·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) ①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·연구 기관(이하 “전문조사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·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고독사 통계의 수집·분석 및 관리 계획서
2.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의 수행 계획서
3. 고독사 통계의 수집·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,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
4.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인력,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
5. 고독사에 관한 조사·연구의 수행 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·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
제3조(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)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(이하 “고독사위험자”라 한다)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
2.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·치료
3.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
제4조(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24. 3. 25.>

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개정 2024. 3. 25.>

1.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2.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
-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은 개별 면담,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담·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

2.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
 3.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
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담·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(이하 "상담교육프로그램"이라 한다)의 개발·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부칙 <제1001호, 2024. 3. 2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